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가단10573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 담당변호사 송일균

피 고 1. C

2. 주식회사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장백규

변 론 종 결 2021. 8. 12.

판 결 선 고 2021. 10. 7.

주 문

1. 원고들의 2021. 8. 4.자 준비서면 중 피고 D에 대한 가수금 반환 청구를 추가하는 청구변경신청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2. 피고 C과 소외 E 사이에 2019. 5. 10.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C은 소외 F(G생), H(I생)에게 위 제2항의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4.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 C에 대하여 : 주문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다만,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소외 F, H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이 사건 판결 확정일경 소외 E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고 청구하였으나, 이를 주문 제3항과 같이 선행하여 판단한다).
-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법인격 부인론 역적용 법리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소외 E, J에게 투자한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다가, E에 대한 채권자로서 E을 대위하여 E의 피고 회사에 대한 가수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이러한 변경신청은 아래의 이유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적법하여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 1) 소외 E, J은 야구장 창단 및 운영 등을 위하여 2016. 10. 28.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그 무렵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 2) K는 피고 회사의 1/2 지분을 인수하여 2019. 7. 2. E의 배우자인 피고 C과 함께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2020. 6.경 피고 회사의 나머지 1/2 지분도 인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C은 2020. 7. 1.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나. 원고들과 E, J 사이의 금전거래내역

- 1) E, J은 원고들에게 운영 중인 ‘L’ 이외에 추가로 ‘M’을 건립할 예정이라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 2) 이에 따라 원고 A은 E에게 2017. 8. 18. 1억 원, 2017. 8. 28.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각 지급하여 투자하고, 원고 B도 E에게 2017. 8. 18. 1억 원, 2017. 8. 28.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각 지급하여 투자하였다(이하 원고들의 위 투자를 ‘이 사건 투자’라 한다).
- 3) 이 사건 투자와 관련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N법률사무소 증서 2017년 제628호로 원고 A과 J, E 사이에, 위 사무소 증서 2017년 제627호로 원고 B과 J, E 사이에 각 2017. 8. 18.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J과 E이 연대채무자로서 원고들로부터 각 1억 8,000만 원을 이율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바, 원고들에게 2018. 8. 28.까지 각 5,000만 원, 2019. 8. 28.까지 각 5,000만 원, 2020. 8. 28.까지 각 나머지 8,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되, 이자 6회 또는 원금 1회 이상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한다는 것이었다.
- 4)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이자 등 명목으로,
 - 원고 A은 2018. 2. 28. 2,000만 원, 2018. 4. 30. 500만 원, 2018. 5. 31. 500만 원, 2018. 6. 28. 250만 원, 2018. 7. 16. 250만 원, 2018. 8. 31. 1,000만 원, 2018. 12. 5. 650만 원 합계 5,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 중 2018. 2. 28.자 지급금 중 900만 원, 2018. 7. 16.자 지급금 중 200만 원, 2018. 8. 31.자 지급금 1,000만 원, 2018. 12. 5.자 지급금 650만 원은 피고 회사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되었다.
 - 원고 B도 2018. 2. 28. 2,000만 원, 2018. 4. 30. 500만 원, 2018. 5. 31. 500만 원, 2018. 6. 28. 250만 원, 2018. 7. 16. 250만 원, 2018. 8. 31. 1,000만 원, 2018. 12. 5. 650만 원 합계 5,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 중 2018. 2. 28.자 지급금 2,000만 원, 2018. 8. 31.자 지급금 1,000만 원, 2018. 12. 5.자 지급금 650만 원은 피고 회사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되었다.

다. E과 피고 C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 1) E은 소외 F, H에게 파주시 O건물, P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2017. 4. 13. 200만 원, 2017. 5. 10. 1,8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2) 원고 A은 2019. 7. 30. E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타채5952호로 위 공정증서(증서번호가 2017년 제628호인 것)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E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 F과 H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는 명령을 받았다.
- 3) 위 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F, H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이 2019. 5. 10. 피고 C으로 변경되었다는 제3채무자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위 의견진술서에 첨부된 ‘다가구 월세 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일 2019. 5. 10., 공동임대인 F 및 H, 임차인 피고 C,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기간 2019. 5. 10.부터 2021. 5. 9.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E의 재산상태

- 1) E은 여수시 Q 대 101㎡ 및 그 지상 시멘트 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39.67㎡를 소유하고 있다. 2019. 5. 10. 기준 시가는 토지 42,622,000원, 건물 7,140,600원 합계 49,762,600원이다.
- 2) 위 각 부동산에는 R조합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이 2,4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 3) 소외 S은 피고 C의 어머니인데 사위인 E에게 2017. 1. 2. 8,000만 원, 2017. 3. 24. 3,000만 원, 2017. 5. 5. 1,000만 원, 2017. 5. 18. 500만 원, 2018. 2. 1. 100만 원, 2018. 3. 5. 100만 원, 2018. 3. 15. 1,300만 원, 2018. 4. 2. 100만 원, 2018. 4. 19. 50만 원, 2018. 4. 30. 100만 원, 2018. 6. 1. 100만 원, 2018. 6. 20. 100만 원, 2018. 7. 3. 200만 원, 2018. 8. 1. 200만 원, 2019. 6. 17. 2,000만 원을 각 지급한 바 있다. E은 S에게 위 2017. 1. 2.자 지급금 8,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 2017. 5. 5.자 지급금 1,000만 원과 2017. 5. 18.자 지급금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에 관한 차용증, 2018. 3. 15.자 지급금 1,3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을 각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및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IBK기업은행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감정인 T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E이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S이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 명의를 신탁하였는바, 이러한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S이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갱신 시에 E의 동의 하에 피고 C에게 양도하였을 뿐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 E의 책임재산인지 살펴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위 인정근거에 의하면, 공동임대인인 F, H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을 E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E 명의의 계좌에서 F, H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이 전부 지급되었으므로, 당초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은 E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임차인 명의를 S이 E에게 신탁하였는지 살펴보면, E이 S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E이 위와 같이 S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에 관하여 S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만이 인정될 뿐으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S이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명의를 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E에게 귀속되는 책임재산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를 E에서 피고 C으로 변경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건대, E은 공동임대인인 F, H의 동의 하에 위 임차인 명의를 피고 C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채권을 피고 C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당시 E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데,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E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상황에서 2019. 5. 10.경 배우자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한편 피고 C의 위 주장을 S이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하여 E이 피고 C에게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양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는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보면, 설령 피고 C이 S으로부터 양수한 E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E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E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상황에서 2019. 5. 10.경 채권자들 중 배우자인 피고 C만을 선별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앞서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E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시가 합계가 49,762,6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또한 E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피고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과 소외 U는 2019. 7. 3. K와 사이에, K로부터 피고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투자금 및 동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되, K에게 피고 회사 지분의 1/2을 양도하는 투자 및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 E와 U는 2020. 6. 15. K와 사이에, 위 투자 및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추가 금전 수수 없이 K에게 피고 회사의 모든 지분을 양도하되 2020. 6. 30.까지 K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K로부터 피고 회사 지분 전부를 재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 회사 지분의 양도 금액, 위 각 계약의 체결 일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E와 U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 지분의 가치는 약 3억 5,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위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이 2,4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E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투자원리금 반환채무는 E이 원고들에게 작성해 준 위 공정증서에서 차용금 원금으로 삼기로 한 금액 기준으로 3억 6,000만 원(1억 8,000만 원 × 2)이며, E의 S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E이 S에게 작성해준 차용증상의 차용금 원금 기준으로 1억 800만 원(8,000만 원 + 1,500만 원 + 1,300만 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한편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2017년 재무상태표의 가수금 항목에 1,402,673,882원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중 상당 부분은 E의 피고 회사에 대한 가수금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피고 회사의 자산 내역 등과 앞서 본 피고 회사 지분의 가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E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위 가수금반환채권은 실질적으로는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E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위 가수금반환채권은 제외함이 상당하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E의 소극재산은 적어도 4억 6,800만 원(= 원고들에 대한 위 3억 6,000만 원 채무 + S에 대한 위 1억 800만 원 채무)을 상회하는 데 반하여, 적극재산은 위 투자 및 동업 계약 등의 계약당사자 명의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 지분 전부를 E 소유로 보고 E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 전부를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으로 보더라도 419,762,600원(E 보유 부동산 시가 49,762,600원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 피고 회사 지분 3억 5,000만 원)에 불과하므로, E은 채무초과상태였다.

3) 결국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공동임대인인

F, H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2021. 8. 4.자 준비서면 중 E를 대위하여 E의 피고 회사에 대한 가수금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2020. 2. 13. 소장을 통하여 법인격 부인론 역적용 법리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들이 E, J에게 투자한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다가, 피고 회사가 E, J과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되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피고 회사의 2017년 재무상태표 등에 기하여 2021. 8. 4.자 준비서면을 통해 E의 채권자로서 E를 대위하여 E의 피고 회사에 대한

가수금반환채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청구 변경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허용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원고들의 종전 청구와

원고들이 선택적으로 추가를 신청한 청구는 앞서 본 것처럼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이 다른 만큼 E의 피고 회사에 대한 가수금에 관한 소송자료가 일부 종전의 소송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심리를 위해서는 종전의 소송자료 이외에 새로운 소송자료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와 같은 청구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63조에 따라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은, 이 사건 투자 당시 E, J이 피고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등으로 피고 회사를 전적으로 지배하였고, 피고 회사와 E, J의 재산이 서로 혼재되어 경제적 동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 법리에 따라 피고 회사는 직접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E, J에게 각 투자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 중 일부인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E, J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피고 회사와 E, J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 관련 법리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1039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인격 부인론은 소위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의 경우에도 인정되어, 배후자가 설립한 회사가 회사법에서 요구되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될 만큼 법인격이 형해화된 경우나 배후자가 개인채무의 면탈을 위하여 회사를 설립한 후 그 회사에 개인재산을 이전시켜 책임재산을 고의로 황폐화시킨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도 배후자의 법률행위로 인한 법적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다만, 형식적인 채무자도 아니고 실질적인 채무자도 아닌 법인에게 배후자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단순히 집행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할 것인바, 통상적인 법인격부인이 인정되는 경우보다 그 인정범위를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투자를 할 당시 E과 J이 피고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사실, 피고 회사가 운영자금을 E이나 J로부터 조달받은 사실, 원고들이 E, J에게 투자한 금원에 대한 이자 등이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되기도 한 사실, 피고 회사가 2017. 8. 9.경 J로부터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야구장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권을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파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1)항의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투자를 할 당시 피고 회사가 회사법에서 요구되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될 만큼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E, J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E, J이 그들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고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피고 회사의 설립일은 2016. 10. 18.으로 E, J이 2017. 8.경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투자를 받을 당시 피고 회사는 이미 설립되어 있었다.

○ E, J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투자를 받을 당시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의 존재를 숨겼다는 점이나, 원고들이 E, J에게 이 사건 투자를 할 당시 E, J을 당사자로 하여 처분문서를 작성하였지만 그 법률효과는 피고 회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신뢰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 E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투자를 받을 당시 여수시 Q 대 101㎡ 및 그 지상 시멘트 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39.67㎡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이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E의 핵심적인 개인재산이 모두 피고 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 회사는 2017. 8. 16. 주주 4인 중 2인이 참석한 가운데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동대표를 폐지하고 E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회사 정관의 목적을 변경한 바 있고, 2020. 7. 1. 서면결의에 의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동대표를 폐지하고 K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 4대 보험에 가입한 피고 회사 직원은 2017. 8. 8. 기준 E 1명뿐이었으나 2018. 1. 1. 기준으로는 4명, 2019. 1. 1. 기준으로는 7명이었고, 피고 회사는 관할 세무서에 2017년 1,727,272원, 2018년 373,214,989원, 2019년 201,084,910원의 매출을 신고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계좌를 별도로 이용하면서 그 계좌를 통해 각종 비용 등을 지출하여 왔는바, 비록 직원의 수가 많지 않고 매출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이름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다.

○ 피고 회사는 E, J과 사이에 있었던 금전거래내역을 가수금, 가지급금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반영하여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작성해 온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2021. 8. 4.자 준비서면 중 피고 회사에 대한 가수금 반환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신청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며,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혜

별지

목 록

소외 E(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 일자불상경 파주시 O건물, P호에 관하여 공동임대인 F(주민등록번호 2 생략), H(주민등록번호 3 생략)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유하는 임차권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0,000,000원 부분. 끝.

